

『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 및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서 명시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(性比) 규정 근거를 제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.

- “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”에서 “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”로 변경

○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4조).

○ 문화예술 관련 사업(행사·축제포함) 위탁 규정 명시(안 제5조).

○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의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(性比) 규정 명시(안 제12조).

○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및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서 명시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(性比) 규정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“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”에서 “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”로 제명을 변경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출근거를 명문화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(행사·축제포함) 위탁 규정 명시하였고,
- 안 제12조에서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 의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(性比) 규정 명시하였고,
- “알기 쉬운 법령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